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302
----------	-------

발의연월일 : 2022. 4. 18.

발 의 자 : 서일준 · 하영제 · 김용판
김승수 · 이철규 · 이주환
이명수 · 양금희 · 지성호
이영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내버스·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에 대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버스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현재 과세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전세버스운송사업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근로자와 학생 등 서민에게 실질적인 대중교통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공익성이 높은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에 어긋남.

또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운행증발급시스템에 따르면,

관광 수요의 급감 등으로 전세버스 운행률은 약 80% 감소(2019년 11월 대비 2021년 10월 기준)하였으나, 매월 발생하는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용의 발생으로 전세버스운송사업자들은 폐업위기에 봉착하였음.

이에 전세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의 공급에 대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9호의4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4호의5 및 제9호”를 “제4호의5, 제9호 및 제9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전세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가가치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제9호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① ----- ----- ----- -----. ----- ----- ----- -----제4 <u>호의5, 제9호 및 제9호의4</u> ----- ----- ----- ----- ----- ----- ----- -----.
1. ~ 9의3. (생략) <u><신설></u>	1. ~ 9의3. (현행과 같음) <u>9의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전세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u>
10. ~ 13. (생략)	10. ~ 1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